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03
----------	------

2020년 3월 3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월 8일, 전병주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전병주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 3조).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함(안 제5조 및 제6조).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3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전병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03호로 발의되어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지역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리터러시의 개념은 인류가 문자를 개발한 이후로 3R(reading, writing, arithmetic)로 의미되면서 주로 활자에 기반한 언어 정보를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후 리터러시의 개념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출처로부터 얻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이해, 분석하여 활용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정보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UNESCO에서는 21세기 학습의 성격을 제시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sup>1)</sup>,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21세기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미래사회 필수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시하였습니다<sup>2)</sup>.

○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8월부터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등이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강화를 강조한바 있으며, 특히 동 계획에서 학교 교육에서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미디어 기술·텍스트 이해 교육을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sup>3)</sup>.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20년까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2021년부터 ‘AI(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1~’25)’을 수립하면서 추진 과제로

---

1) UNESCO(2001). A Study of impact of literacy programme on the welfare of the families of neo-literates.

2) World Economic Forum(2016). 8 digital skills we must teach our children.

3) 관계부처 합동(2020.8.).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AI·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한편 경기도에서도 미디어 노출이 많은 학생들이 사회현안과 관련되어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고자 2020년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수립케 하고 서울시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폭넓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AI교육 계획 내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추진내용**

중점과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AI 기반 융합 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1-1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 AI 기반 융합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과정 · AI 핵심교과 강화 및 진로교육 내실화 · AI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선순화 체제 구축
	1-2	도전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지원	· 학생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 새로운 배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교원 성장지원 · 학부모 AI 융합 미래교육 이해 및 참여 지원
AI 기반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2-1	모두가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융합 교육	· AI 기반 교육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지원 · AI 윤리 및 <b>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b> · <b>AI·디지털 리터러시 체험중심 교육자료 개발·보급</b> · <b>학교로 찾아가는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멘토 운영</b>
	2-2	AI 기반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 AI 기반 시스템 활용 기초학력 보장 지원 · AI 튜터 활용 취약계층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	3-1	AI 기반 융합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 AI·데이터 활용 기반 교육환경 혁신 · AI·데이터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
	3-2	학교 안전 및 업무경감 교육환경 혁신	· 안전사고 예방 및 진단 AI 시스템 구축 · AI 기반 업무 자동화 및 학교 업무 경감
	3-3	AI 기반 공유·협력 및 교육문화 확산	· AI·데이터 활용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AI 교육 확산으로 글로벌 공유문화 기여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안 제6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안 제7조, 안 제8조), 회의 및 수당(안 제9조, 안 제10조), 연수 및 재정지원(안 제 11조,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등을 규정하여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 수립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지원,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기본 틀과 주요 골자를 정리한 것으로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20.7.2)에 발맞추어 학생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대강을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해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AI(인공지능)기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써 제시된 것으로 교육자료 개발, 멘토 운영 이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또한 원격교육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교육을 위한 시범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학교, 혁신미래학교, SW교육 선도학교 등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이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 및 매체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매년 수립중인 '기초·기본학력 보장 지원 계획'과 함께 학생들의 각종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미디어로 전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안 제5조-안 제10조)

- 동 조례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계, 각 분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남발과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추가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는 연속성(continuum) 및 다국면적(multidimensional)인 속성으로 인해 미디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통신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등 오늘날 모든 형태의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sup>4)</sup>

동 조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자문위원회는 미디어로 제공되는 사회 현안 정보에 대한 바른 해석을 다루는 경기도의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달리 미디어를 포함하여 컴퓨터,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등 동 조례가 포괄하는 리터러시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에서 별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전문가의 판단과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거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현재 서울시 교육청내 102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연간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sup>5)</sup> 향후 교육청은 동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안 제11조(연수) 안 제12조(재정지원) 안 제13조(협력체계 구축)등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을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024. 2021.2.9.).

4) 한국학술정보원(2006). 21세기 지식정보 역량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구성,

5) 2020년도에 총 15개 위원회(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교육행정협의회,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교육기부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자문위원회,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